

4. 金融機關 不實資産 등의 效率的處理 및 成業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施行令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주요 골자

-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범위를 구체화함.(령 제2조)
- 나. 성업공사가 인수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수위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령 제5조)
- 다. 성업공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함.(령 제9조)
-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손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하여 개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령 제22조)
- 마.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방법 및 채권의 기재사항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23조 내지 제36조). <법제처 제공>

제정 이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
구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산업구
조개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7. 8. 22., 법률 제537조)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정
리절차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
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금
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자목에서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
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
조합
4. 은행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
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6.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7.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
금융회사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
용보증기금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

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6.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3조(부실자산의 정리의 수임방법·절차)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성업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기관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방법·절차) ①금융

기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 부실채권 :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2. 비업무용자산 : 소유권이전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에 금융기관·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당해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할 수 있다.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부

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기준 등)

1.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

2.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

3.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은 부실자산

4.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어 조속한 매각

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자산

②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당해 부실채권의 인수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부실자산을 기금의 부담으로 인수하는 때에는 금융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입 또는 인수) ①제3조의 규정은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은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 : 소유권이전
2. 유가증권 :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3. 계열기업 : 당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③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금융기관 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이를 출자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외의 출자

금의 납입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다른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6호의 사항 및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제11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10조제2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등기)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

조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에 한한다.)을 선임한 때에는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공사의 사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 부실자산 등의 인수규모) 법 제14조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수금액이 100억원이상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인수하는 부실자산중 인수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것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법 제26조제1항제10호(동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부동산중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예상개발비용이 취득대상부동산의 예상인수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제17조(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

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공사의 부대업무)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실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을 위한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2.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상담
3. 기타 부실자산의 정리, 부실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업무

제20조(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기준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으로서 개발(분할·합병·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발대상부동산의 인수가격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발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부동산을 개발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1. 개발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거나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2. 지역발전 기타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을 요청하는 부동산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기준 및 매입절차)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부동산은 취득대상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대상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공사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출연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별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당해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출연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입시기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채권의 발행신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24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①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

다.

제27(총액인수의 방법) ①제26조의 규정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채권발행총액) ①공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9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31조(채권원부)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

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①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는 당해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이권흡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흡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②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제36조(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①법 제41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함은 인수금액이 50억원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연간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업공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잔여재산의 처리) ①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잔여재산의 반환시기는 기금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대부분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잔여부채의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조기에 반환할 수 있다.

②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③공사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공사의 설립등기일(이하 “설립등기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의 이익잉여금과 보유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에서 보유재산의 장부가격과 부과될 제세공과금 및 계상할 부채성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유재산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설립등기일전 3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액

2. 부동산외의 재산 :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산업은행에 귀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최초 출자금 및 출연금 납입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출자 및 출연에 있어서 출자 및 출연 대상금융기관, 출자금 및 출연금의 산정방법 및 납입시기 등은 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채권발행준비에 관한 특례) 공사가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보증의 신청 등 기금채권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위원

회가 이를 행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③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⑩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⑪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제30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

처서 매각하는 경우 및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⑫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주택회보